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제출연월일 : 2006. 6.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6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일부 개정된 재산세 규정과 임대주택 관련 감면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세 감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 (안 제8조)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9조)

- 2005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신설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의 개정 필요

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 (안 제11조)

-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토지·지상정착물·주택”으로 개정 함.

라.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3)

바.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정비 (안 제19조)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분 재산세 감면조항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1173(2006.2.2)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공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조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으로 한다.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3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를 “창고용으로”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신 설> 제14조의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의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p> <p>-----</p> <p>----- 참고용으로 -----</p> <p>-----</p> <p>-----</p> <p>-----</p> <p>-----</p> <p>-----</p>